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877
----------	-------

발의연월일 : 2018. 2. 9.

발 의 자 : 임종성 · 안호영 · 소병훈
신창현 · 강훈식 · 민홍철
조승래 · 이찬열 · 김두관
이동섭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말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에 이어 최근 밀양 세종병원에서도 화재로 39명이 사망, 100여명 이상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음. 이처럼 사상자가 많아진 데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스프링클러는 화재 발생시 초기 진화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방시설임에도, 의무설치 면적에 제한이 있었기 때문임. 이에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의 의무설치에 면적제한을 두지 않으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신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할 경우,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은 면적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47조의2제1항제2호 중 “제9조제2항”을 “제9조제3항”으로 한다.

제47조의3제1항제2호 중 “제9조제3항”을 “제9조제4항”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제9조제3항”을 제9조제4항“으로 한다.

제48조의2제1호 중 “제9조제2항”을 “제9조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제9조제2항에 따른 소방시설 에 대한 조치명령	2. 제9조제3항----- -----
3. ~ 8. (생략)	3. ~ 8.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47조의3(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누구든지 소방본부장 또는 소 방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를 신고할 수 있다.	제47조의3(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 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	2. 제9조제4항-----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8조(벌칙) ① 제9조제3항 본문 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에 폐쇄· 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8조(벌칙) ① 제9조제4항 ---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48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8조의2(벌칙) ----- ----- ----- -----.
1. 제5조제1항·제2항, 제9조제2 항, 제10조제2항, 제10조의2제	1. -----제9조제3 항-----

3항, 제12조제2항, 제20조제12항, 제20조제13항, 제36조제7항 또는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 ----- ----- ----- -----
2. ~ 7. (생략)	2. ~ 7. (현행과 같음)